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9, Number 4, Dec, 2007: pp. 159~175
통상정보연구 제9권 4호 (2007년 12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07. 10. 28159
게재확정일자 : 2007. 12. 14

USITC의 반덤핑 피해판정에서의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에 관한 연구

Study concerning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of Like Product and Domestic Industry in USITC's Antidumping Injury Determination

하충룡(Choong-Lyong Ha)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부교수
한나희(Na-Hee Han)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박사과정

목 차

Ⅰ. 서 론
Ⅱ. 미국반덤핑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현황
Ⅳ.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Under U.S. Antidumping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law is shared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USDOC)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USDOC's task is to determine whether imports are being dumped, and if so, to estimate the margin of dumping.

In determining whether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injured or threatened with material injury, 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retarded, by reason of the subject imports, the USITC must first define the 'like product' and the 'domestic industry'.

One of the crucial factors on antidumping measures is the interpretation's scope of the 'like product' and the 'domestic industry', leading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U.S. antidumping law.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omestic industry' and 'like product' considering U.S. antidumping law. Most USITC's determinations regarding like product and industry as flexible conception have been supported by the U.S. Courts.

Key Words : U.S. Antidumping, Like product, Domestic Industry, USITC

Ⅰ. 서 론

미국의 통상정책 및 집행은 비록 국내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국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덤핑 규제 등에 있어 미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가 문제시 되고 있다.[1)]

미국 관세법상에서는[2)] 덤핑을 "특정 종류의 외국상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으로 정의하는데,[3)] 즉 이는 당해 제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책정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된다.[4)] 또한 미국 반덤핑법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이 존재하고, 그러한 덤핑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어야 한다.[5)]

미국 내 국내산업의 피해를 결정하는 기관인 USITC는, 피해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산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하는 해석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6)] 또한 "국내산업"의 해석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동종상품"의 개념이 핵심요소로 그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7)]

최근, 한·미 FTA의 타결[8)] 이후에 양국 간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연히 수입규제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는 감소추세이나, '07년 5월말 현재 우리 상품은 19개국[9)]으로부터 총 113건[10)]의 수입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22건), 인도(21건), 미국(19건) 순이고,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화학·철강이 전체의 64.6%를 점유하고 있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8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1)]

여전히 대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는 우리 기업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미국은 민주당 집권 이후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교역관련 법안 처리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련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

---

1) 김기영, "통상의 국내적 규제와 사법심사 -미국국제무역법원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성격과 의의-"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12, p.74.

2) Title Ⅶ of the Tariff Act of 1930.

3) 19 U.S.C. § 1677(34). *Dumped; dumping.*
'The terms "dumped" and "dumping" refer to the sale or likely sale of goods at less than fair value.'

4) 19 U.S.C. § 1677(35). *Dumping margin.*
'.... the normal value exceeds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of the subject merchandise.'

5) 19 U.S.C. § 1673.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6) Robert Carpente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12 edi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pril 2007, p.Ⅲ-32.; Kara M. Reynolds, "Dumping on U.S. Farmers: Are There Biases in Global Antidumping Regul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2006-03*, American University, January 2006, p.14.

7) Bruce M. Steen, "Economically Meaningful Markets: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Like Product' and 'Domestic Industry' under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Virginia Law Review*, *73 VALR 1459*, November 1987, p.1493.

8) 2007년 4월 2일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이후, 현재 양국 정부의 체결과 비준만이 남은 상태이다.

9) EU: 1개국 간주.

10) 조사 중인 사건 12건 포함.

11)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참고자료 "민관합동 수입규제대책반 회의 개최"

하여 물량조절 등으로 수입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12]

따라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의 반덤핑부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13] 이에 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덤핑법과는 상이한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미국의 반덤핑법과 관련한 연혁 및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관할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Ⅲ장 및 Ⅳ장에서는 반덤핑관세부과의 필수조건인 USITC의 피해결정에서, 핵심요소인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현황 및 해석범위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Ⅴ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법리의 운용상의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연혁적 고찰

미국 최초로 의회에서 통과된 반덤핑법은 1916년 반덤핑법(The Antidumping Act of 1916)[14]으로, 동법은 미국 내로 덤핑된 외국상품을 수입한 당사자에 대하여 연방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5] 하지만 이후 의회는 상이한 유형의 반덤핑법을 구상하여, 미국에서 덤핑에 대한 행정적 구제를 정한 최초의 제정법인 1921년 반덤핑법(Title Ⅱ of the Emergency Tariff Act of 1921)[16]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동법은 1921년 의회를 통과하여 1979년까지 지속해왔던 반덤핑법으로, 주장된 덤핑관행에 대하여 재무부가 조사를 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17]

---

12) KOTRA 통상전략팀, 「2006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7년도 전망」, KOTRA, 2006. 12, p.39.

13) 실제 1995년에서 2003년간 USITC에 청원된 반덤핑 가운데 7%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 기업에 입장에서는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뿐만 아니라 조사개시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 Robert M. Feinberg and Kara M. Reynols, "Friendly Fire?: The Import of US Antidumping Enforcement on US Exporters",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2006-04*, American University, April 2006, p.2.

14) Act of September 8, 1916, ch. 463, sec. 801, 39 Stat. 708, 15 U.S.C. §. 72; 피해요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경쟁에의 피해(injury to competition)"를 기준으로 채택

15) 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Project(NFAPP), "Antidumping Legislation: Issues for the Produce Industry", *NFAPP #00-1*, Arizona State University, January 2000, p.1.; 동법은 덤핑행위에 대하여 미국보통법상 불법행위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적용되므로, "고의"에 대한 입증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16) Act of May 27, 1921, ch. 14, 42 Stat. 11, 19 U.S.C. §. 160. (now repealed); 동 법은 1921년 긴급관세법(the Emergency Tariff Act of 1921)의 일부로서 제정된 것인데다가 행정기관인 재무성에 의해 운용되어 행정적 구제만을 주었기 때문에 보호주의적 성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요건과 관련하여 "산업에의 피해(injury to industry)"로 대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동안, 미국은 1921년 반덤핑법을 근거로 하여 국제반덤핑규정초안을 제안하였고, 동 제안서는 GATT 제Ⅵ조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여러 나라의 반덤핑법 모델로서 역할을 했다.

17) 동법에서 반덤핑 판정과 관세부과의 권한을 재무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지금의 행정절차와 유사한 미국 반덤핑법의 절차를 지니게 되었다. 권영민,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체제에 대한 비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pp.36-37.; 이상윤, "덤핑수입피해 판정시 고려요인 평가방법과 인과관계 설정기준", 「무역구제-겨울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1, p.47.; J. Michael Finger,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Antidumping Regulation," *Working Paper WPS 783, The*

이후, 미 의회는 1979년 통상협정법(the Trade Agreement Act of 1979)[18]을 통과시켜 개정된 GATT 반덤핑법을 채택하였다. 1979년법 제Ⅰ편에서 1921년 반덤핑법은 폐지되었고[19] GATT 반덤핑협정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 1930년 관세법 제Ⅶ편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1979년법은 주요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변경하였고, 재무부에서 상무부로 반덤핑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이관되면서,[20] 미국 반덤핑법은 보호주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21] 또한 산업과 관련하여 1921년 법은 별다른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산업에 대한 협의의 정의를 부여하였다.[22]

이후 반덤핑법은 1984년 통상 및 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23] 제Ⅵ편과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24] 제Ⅰ편 제1장 2부로 개정되었다. 개정가운데 1984년법은 조사국가에서의 수입누적과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과 관련하여 반덤핑법 조항을 변경하였다.[25] 1988년법은 우회덤핑명령의 방지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 및 특정 상황과 관련한 법조항을 일부 개정하였다.

미국반덤핑법은 가장 최근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 Act of 1994; URAA)[26]이다. URAA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요하는 바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URAA는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 특정상황, 지역산업, 관련당사자, 누적평가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법조항을 개정하였다.[27]

World Bank, October 1991, pp.12-15.

18) Pub. L. No. 96-39, July 26, 1979. 동법은 1921년 반덤핑법에서는 단순히 “피해”로 되었던 것을 “실질적인 피해”로 개정하여 GATT 제6조 및 동 국제 반덤핑 협정과 일치 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협의의 정의를 부여하였다. 실질성 요건은 동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USITC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것이다.

19) Douglas A. Irwin, "The Rise of U.S. Antidumping Activity in Historical Perspective", *IMF Working Pater WP/05/3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ebruary 2005, p.6.

20) Reorganization Plan No. 3 of 1979, 44 Fed. Reg. 69, 273(Dec. 3, 1979); and Exec. Order No. 12188, January 2, 1980, 45 Fed. Reg. 989.; *Overview and Compilation of U.S. Trad Statues*, *Overview and Compilation of U.S. Trade Statut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09th Congress 1st Session, 2005 Edition, June 2005, pp.103-104.; 고준성 외,「미국통상법연구」, 법무부, 1996, p.292.; 도쿄라운드 협상결과 GATT 체약국 간 ‘1979년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자 미국은 1979년 통상협정법에서 동 협정을 승인하고 아울러 1921년 반덤핑법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1921년 반덤핑법은 1930년 관세법 제Ⅶ편으로 대체되어 오늘날의 미국 반덤핑법을 구성하게 되었다.

21) Chad P. Bown, Rachel McCulloch, "Trade Remedies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Why Are So Few Challenged?", *Journal of Legal Studies*, June 2005, p.16.; 박형래, “USITC의 대 아시아 개도국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제29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4. 04, p.58.; 이는 재무부가 공정무역법의 관리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처 자체의 대외 지향적인 속성 때문에 외국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 할 수도 있다는 청원에 따른 것이다.

22) 이춘삼, “미국 반덤핑법상 국내산업피해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해석론(상)”,「통상법률」제23호, 법무부, 1998. p. 51.

23) Pub. L No. 98-573, October 30. 1984, 98 Stat. 2948.; 19 U.S.C. §. 1654.

24) Pub. L. No. 100-418, August 23. 1988, 102 Stat. 1107.; 19 U.S.C. §. 2901.

25) USITC가 구체적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조사대상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합산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6) Pub. L. No. 103-465, December 8. 1994, 109 Stat. 4809.; 국내산업의 기본정의와 관련하여 그 용어상의 일치를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7) Parr Rosson and Flynn Adcock, "A Primer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etitions", *Center for North American Studies CNAS 2000-1*, January 2000, pp.16-17.

2. 절차적 고찰

미국 반덤핑법에 따라 덤핑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8] (1) 상무부가 동종의 외국상품이 "공정가격(fair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것이라고 판정; (2) 당해 상품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상품의 판매(또는 판매될 것)에 의해 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위협"에 처해 있거나 또는 미국 "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된다고 USITC가 판정.[29]

상무부[30]와 USITC 양 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의 전체 조사과정은 총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상무부에 의한 조사개시(청원제출일 부터 20일 이내)[31]; (2) USITC의 피해예비판정(청원제출일 부터 45일 이내)[32]; (3)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USITC의 피해예비판정 이후 115일 이내)[33]; (4) 상무부의 덤핑최종판정(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이후 75일 이내)[34]; (5) USITC의 피해최종판정(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 이후 120일 이내 혹은 상무부의 덤핑최종판정 이후 45일 이내[35])[36].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3단계)을 제외하고, 상무부나 USITC에 의해 "부정"판정이 나면 즉시 당사자의 절차는 종결된다. 하지만 피해최종판정이 긍정적이라면 상무부는 피해최종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반덤핑관세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사실의 존재와 피해사실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 반덤핑법상에서는 덤핑의 피해를 USITC가 결정함에 있어, 덤핑조사의 범위 내에 수입된 상품이 "동종" 상품의 미국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핀다.[37]

---

28) 19 U.S.C. § 1673.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If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a class or kind or foreign merchandise is being, or is likely to be, sold in the United States at less than its fair value, and
(2)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A)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 is materially injured, or
(ii) is threatened with material injury, or
(B)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retarded,
by reason of imports of that merchandise or by reason of sales (or the likelihood of sales) of that merchandise for importation, ...

29)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기준 및 실질적인 피해우려기준은 기존 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 반면,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체기준은 신설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0) 실제 상무부의 산하기관인 국제교역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담당

31) 19 U.S.C. §§ 1671a(c) and 1673a(c) 하지만 상무부는 투표를 요하거나 기타 산업지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조사개시판정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2) 조사개시가 연기된다면, 조사개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가 있은 후 25일 이내.

33) 19 C.F.R §351.205(b), (e) 상무부는 반덤핑의 경우 50일까지 피해예비판정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4) 19 C.F.R. §351.210(b), (e) 상무부는 60일까지 최종덤핑판정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5)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부정적이라면, 상무부의 최종덤핑판정 이후 75일 이내.

36) USITC는 19 U.S.C. §.1651(c)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sunset review)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정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관할구조상 USITC의 권한

미국의 관할구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덤핑과 관련한 미국의 관할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판정하는 연방기관으로 상무부와 USITC 즉, 이원론적 시스템으로 양분화 되어있다.[38] 양 기관에서의 반덤핑판정이 종료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USITC의 조사에서 당사자들인 이해관계자[39]는 USITC의 판정에 대하여 국제무역법원(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에 상소한다.[40] 이후 CIT에서 상소에 대한 "최종판결"을 하고나면, 패소당사자는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41] 여기에서의 판결은 CIT가 본안에 대한 소송을 끝내고 판결의 집행만을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종국적"이라는 지적이 있다.[42] 뿐만 아니라 미 의회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령과 수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의 사법적 재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성을 위해 CIT의 관할권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43], CIT의 관할권은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아 보인다.[44]

연방항소법원이 USITC의 판정에 대해 검토할 경우, 부정적 예비피해판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판정은 변화된 상황의 검토나 일몰재심판정의 검토와는 별도로 취급하며, 판정이 반덤핑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혹은, 자유재량을 남용하여" 결정했는지 여부를 살핀다.[45] 항소가 기타 반덤핑 판정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USITC의 판정이 "반덤핑법에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실체적 증거기록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지"여부만을 판정해야 한다.[46] 이러한 기준들은 연방항소법원이 USITC의 사실적 분석 및 피해와 인과관계결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47] 또한, 연방항소법원은 USITC의 판정에 대

37) Robert Carpenter, *op. cit.,* p. Ⅰ-8.

38) Parr Rosson and Flynn Adcock, *op. cit.*, pp.2-3.;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의 무역위원회에서 일임하는 일원론적 시스템이다.

39) 19 U.S.C. § 1677(9)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자는 조사대상상품의 수입자나 외국생산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 혹은 전체판매자, 당해산업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 등을 일컫는다.

40) 19 U.S.C. §§ 1516a(1)-(2).; 28 U.S.C. § 1581(c)에 의거하여, CIT는 19 U.S.C. § 1516a(a)에서 개시되는 민사소송(civil action)에 대한 배타적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CIT에 이의제기를 하는 원고는 USITC의 반덤핑 조사단계에서 부정적 예비 피해판정, 반덤핑조사단계에서 최종피해판정(부정 혹은 확정) 및 일몰재심에서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 또한 기타 USITC의 결정에 대하여 CIT에 항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USITC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재고에서 최종판정과 반덤핑조사에서 유보합의에 대한 피해효과 판정 등이 있다.

41) 28 U.S.C. § 1295(a)(5).

42) *Cabot Corp. v. United States*, 788 F.2d 1539, 4 Fed. Cir. (T)80, Appeal No. 86-729, April 9 1986, p.1539.; *McLean v. Department of Treasury*, 2007 WL 4125032, *1 (Fed.Cir. Nov 05, 2007) (Table, text in WESTLAW, NO. 2007-3291), p.1.; *Hyatt v. Dudas*, 492 F.3d 1365, 1368, 83 U.S.P.Q.2d 1373, 1373 (Fed.Cir.(Dist.Col.) Jun 28, 2007) (NO. 2006-1171), p.1368.

43) John a. Bourdeau, "The ALR databases are made current by the weekly addition of relevant ne cases",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1998, p.31.

44) *ibid*, p.32.

45) 19 U.S.C. §§ 1516a(b)(1)(A), (B)(ⅱ).

46) 19 U.S.C. § 1516a(b)(1)(B)(ⅰ).

47) *Nippon Steel Corp. v. U.S.*, 458 F.3d 1345, 1347+, 28 ITRD 1321, 1321+ (Fed.Cir. Aug 10, 2006) (NO. 05-1404, 05-1417); *Nippon Steel Corp. v. Int'l Trade Comm.*, 345 F.3d 1379, (Fed. Cir. 2003), p.1381.; *U.S. Steel Group v. United States*, 96 F.3d 1352, (Fed. Cir. 1996), p.1357.; *Texas Crushed Stone Co. v. United States*, 35 F.3d 1535, (Fed. Cir. 1994), p.1540.; 28 U.S.C. § 2639(a)(1); 의회는 명시적으로 USITC의 결정이 "명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판정에 대

한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48] 다시 말해, 연방항소법원은 “USITC의 판정 자체에 대해 증거를 재검토하거나 판정을 대체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49]

마지막으로 원고가 USITC가 특정법령을 부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법원은 당해사안에서 USITC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결정한다.[50]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법원은 “당해사안에 대한 의회의 입법목적과 의도가 정당하게 규명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령이 침묵하거나 애매한 경우라면, USITC의 법령해석이 합리적인 한 이를 따라야만 한다.[51]

결과적으로 반덤핑과 관련하여 사례별로 다양한 형태로의 관할권을 허용 혹은, 배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2] 또한 연방법원 및 CIT는 USITC의 실체적인 피해의 판정을 존중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 피해판정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내산업과 동종상품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 및 USITC의 해석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현황

1. 동종상품의 현황

국내산업에 대한 정의에 있어 그 핵심적 요소인 “동종상품”이란 용어가 미국반덤핑법에 도입된 것은 “산업”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던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한 일이다.[53] 법령상에서 “국내동종상품”이라 함은 조사대상 상품과 동종이거나 그러한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 특성과 용도에 있어 가장 유사한 상품을 가리킨다.[54]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하여 1979년 통상협정법을 제정할 당시 심의과정에서 “동종상품이란 용어는 물리적 특징 또는 용도상의 사소한 차이임에도 상품을 배제할 정도로 그 의미를 협의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제소인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55]

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8) *Committee for Fairly Traded Venezuelan Cement v. U.S.*, 279 F.Supp.2d 1314, 1319+, 27 C.I.T. 1104, 1104+, 25 ITRD 1903, 1903+ (CIT Jul 28, 2003) (NO. SLIP OP. 03-95, 00-12-00547), p.1107; *Texas Crushed Stone Co. v. United States*, 35 F.3d 1535, (Fed. Cir. 1994), p.1540.

49) Andrea C. Cassin, Neal J. Reynolds, "Judicial Revi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s Injury Determination injur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8 Geo. J. Int'l L. 89)*, Fall 2006, p.92.

50) 19 U.S.C. § 1516a(b)(1)(A),(B)

51) Andrea C. Cassin, Neal J. Reynolds, *op. cit.*, pp.92-93.

52) John a. Bourdeau, *op. cit.,* p.34.

53) Bruce M. Steen, *op. cit.,* pp.1471-1472.

54) 19 U.S.C. § 1677(10). *Domestic like product.*
The term "domestic like product" means a product which is like, or in the absence of like, most similar in characteristics and uses with,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under this subtitle.

동종상품의 개념은 반덤핑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출국 시장 내에서 정상가격 결정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상품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수입국 내에서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상품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56] 하지만 법령의 정의와는 별도로, 입법연혁[57]에서는 동종상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짧은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들은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58]

지금까지 USITC가 "동종상품"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59] (1) 물리적인 특징과 용도(physical characteristic and uses), (2) 대체성(interchangeability), (3) 유통경로(channels of distribution), (4) 상품에 대한 고객과 생산자의 인식(customer and producer perception of the products), (5) 공통적인 제조설비 및 생산과정과 생산근로자(common manufacturing facilities, production processes, employees), (6) 적절하다면, 가격(where appropriate, price). 이러한 요소들은 ITC의 사례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60]

덤핑피해의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국내동종상품인지 여부에 관한 USITC의 결정은 사실상(factual)의 결정이며, "동종" 혹은 "특성과 용도에 있어 가장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령에서의 기준을 사례별로 적용한다.[61] USITC가 비록 조사과정에서 수입된 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상무부가 그 결정을 승인하여야 하더라도, USITC는 상무부가 확인한 수입된 상품이 어떤 국내상품과 동종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62] 즉, USITC의 동종상품 결정은 제품에 대한 분류에 대한 상무부의 결정과는 개별적이며 구별되는 것이다.[63]

USITC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무부가 결정한 범위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국내동종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수입된 상품의 종류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국내동종상품을 제시할 수도 있다.[64] 즉, "동종상품"의 개념은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개념이라고

55) 이춘삼, 전게논문, pp.58-59.

56) 임병우, "반덤핑절차에서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획정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문제점 및 제언", 「무역구제」2006-여름호, 무역위원회, 2006, p. 79.

57) Legislative history로 특정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경과로써 청문의 내용; 소위원회 보고 등을 포괄하고 있다.

58) David M. Repp, *op. cit.,* p.73.

59) See The DOC, ia.ita.doc.gov/pcp/pcp-likeproduct.html

60) 우리나라가 소 당사자인 사례의 경우에도 ITC는 동종상품 고려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6가지 기준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Certain Stainless Steel and Strip From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Republic of Korea, Mexico, Taiwan, and The United Kingdom*, Investigation Nos. 701-TA-380-382 and 731-TA-797-804(Final), USITC Publication No. 3208. July 1999, pp.5-7. 하지만 동 사건에서 열연후판코일의 특징 및 최종용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61) *Cleo Inc. v. U.S.*, 2006 WL 2685080, *3+, 28 ITRD 2294, 2294+ (CIT Aug 31, 2006) (NO. 05-00336, SLIP OP. 06-131), p.3; *NEC Corp. v. Department of Commerce*, 36 F.Supp.2d 380, 383+, 22 C.I.T. 1108, 1110+, 20 ITRD 2359, 2359+ (CIT Dec 15, 1998) (NO. 98-164, 97-11-01967), p.383.; *Nippon Steel Corp. v. United States*, 19 CIT 450, (CIT 1995), p.455.;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 747 F.Supp.744, (CIT 1990), p.749.

62) Robert Carpenter, *op. cit.*, pp.Ⅲ-32 ~ 33.

63) *NMB Singapore Ltd. v. U.S.*, 288 F.Supp.2d 1306, 1313+, 27 C.I.T. 1325, 1325+, 25 ITRD 1985, 1985+ (CIT Sep 03, 2003) (NO. SLIP OP. 03-115, 00-07-00373), p.1332.; *Cleo Inc. v. U.S.*, 501 F.3d 1291, 1295, 29 ITRD 1481, 1481 (Fed.Cir. Sep 10, 2007) (NO. 2007-1036, 2007-1037) p.1295.;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 747 F.Supp.744, Sept. 11, 1990, p.748.

64) *Cleo Inc. v. U.S., Id*; *Hosiden Corp. v. Advanced Display Mfrs*., 85 F.3d 1561, May 31, 1996, p.1568.;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 747 F.Supp.744, Sept. 11, 1990, pp.748-752.

할 수 있으며, 실제 미 의회나 법원 모두 이 문제에 있어 USITC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65]

USITC의 국내동종상품의 결정요소는 어떠한 요소도 결정적이지 아니하며, 개별 조사마다 관련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대상과 국내동종상품 간의 명백한 차이를 찾으려 하며, 경미한 차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2. 국내산업의 현황

1979년 통상협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은 물론 어떠한 해석상의 지침규정도 없었기 때문에,[66] USITC가 자의적으로 산업의 의미를 해석하고 개별 사례별로 적용시켜왔다.[67] 이에 1979년 동경라운드의 결과 국제반덤핑협정을 미국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산업에 관한 상세한 정의규정을 통상협정법[68]에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69]

미국 반덤핑법에 따라 피해의 판정을 위하여 세 가지 실체적 기준인 (1) 실질적인 피해; (2)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3)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체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러한 기준의 적용대상이 "미국산업"에 해당해야 함을 요하고 있다.[70] 또한 법령상 "산업"은 "국내동종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들의 국내동종상품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제품의 국내총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생산자"들을 의미하고 있다.[71]

예를 들어 여러 사례에서 법원은 "동종상품의 결정은 산업의 결정이다"는 판결을 함으로써,[72] 법령상의 정의로 산업을 해석했다. 하지만 대표적 사례인 *Ellis K. Orlowitz Co. v. United State*에서, '산업'이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 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며,[73] 지금까지도 이러한 견해가 유지되고 있다.[74] 실제 대부분의 반덤핑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수입의 영향은 미국산업 전

---

65) 고준성 외, 전게서, p.354.

66) Bruce M. Steen, *op. cit.*, pp.1417-1472.

67) 이춘삼, 전게논문, p.58. '국내산업을 결정하는 요소인 제품시장과 지역시장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협의로 해석하려는 등 매우 다양한 해석이 전개되었다.'

68) Pub. L. No. 96-39, July 26, 1979.

69) John H. Barton, Bart S. Fisher, Michael P. Malloy, "Antidumping Duties", American Trade Policy,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2006, p.8.

70) 19 U.S.C. § 1673.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동 법에서 반덤핑 피해의 판정을 위한 세 가지 실체적 기준이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의 인과관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71) 19 U.S.C. § 1677(4)(A). *Industry.*
The term "industry" means the producers as a whole of a domestic like product, or those producers whose collective output of a domestic like product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e product.

72) *Asociacion Colombiana De Exportadores De Flores v. United States*, 12 C.I.T. 634, 693 F.Supp. 1165, July 14, 1988, p.1169.; *Cleo Inc. v. United States*, 2006 WL 2685080, *3+, 28 ITRD 2294, 2294+ (CIT Aug 31, 2006) (NO. 05-00336, SLIP OP. 06-131), p.3.; *NEC Corp. v. Department of Commerce*, 36 F.Supp.2d 380, 383+, 22 C.I.T. 1108, 1110+, 20 ITRD 2359, 2359+ (CIT Dec 15, 1998) (NO. 98-164, 97-11-01967), p.1110.

73) *Ellis K Orlowitz Co. v. United States*, 47 Cust.Ct. 583, 200 F.Supp.302, Oct. 23, 1961, p.310.

체를 상대로 이루어지나,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산업을 기초로 하여 수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75]

이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전국산업(national industry)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역산업(regional industry)이 덤핑으로 인해 수입거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76] 한편, 미국의 URAA 제218조에서도 원칙적으로 WTO협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미국 반덤핑법 19 U.S.C.A. 1677(4)(C)항의 지역산업에 관한 정의를 개정하여, "지역산업이라 함은 고유한 상황에서, 미국의 특정상품 시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될 수 있고 각 시장의 생산자들은 별도의 산업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였다.[77] 이에 USITC의 지역산업에 대한 조사는 당해 지역 내의 생산설비에 대한 검토로 국한됨을 알 수 있다.

Ⅳ.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

USITC는 미국 내 산업이 수입상품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혹은 미국산업의 설립에 있어 실질적인 지체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먼저 "산업"과 "동종상품"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하는 해석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78]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국내산업의 범위와 동종상품의 범위가 동일한가 혹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상품이 동종상품의 범위에도 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79] 이에 지금까지의 USITC의 반덤핑 피해판정에서의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가 있는 것이다.

---

74) Daniel E. Feld,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ntidumping Act of 1921", *42 A.L.R. Fed. 821, American Law Reports ARL Federal*, 2007, (originally published in 1979, 현재에도 관련 사례를 매주 추가 하고 있음), article 11[b]. "Determination of injury to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 Meaning of 'industry'"

75) 고준성 외, 전게서, p.359.

76) WTO 반덤핑협정 제4.1조(2)항.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territory of a Member may, for the production in question, be divided into two or more competitive markets and the producers within each market may be regarded as a separate industry ...'
WTO 반덤핑 협정 제4.2조.
'When the domestic industry has been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producers in a certain area, ...'

77) 19 U.S.C. §. 1677(4)(C) *Regional Industr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the United States, for a particular product market, may be divided into 2 or more markets and the producers within each market may be treated as if they were a separate industry if--
(ⅰ) the producers within such market sell all or almost all of their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in question in that market, and
(ⅱ) the demand in that market is not supplied, to any substantial degree, by producers of the product in question located elsewhere in the United States. ...

78) Robert Carpenter, *op. cit.*, p.Ⅲ-32.; Kara M. Reynolds, *op. cit.*, p.14.

79) 예를 들어,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단일회사의 물품이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동 물품이 당해 동종상품이면서 국내산업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이렇게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 복잡한 경우 즉, 원자재의 생산부터 물품의 생산까지 모두 상이한 경우에 완제품이 조사대상물품이지만 이와 관련한 원자재나 부속품을 동종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산업의 법위가 상이해 질뿐만 아니라, 제소자의 범위도 상이해 질 수 있다.

미국 반덤핑법에 따라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는 “조사대상상품과 동종이거나 그러한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 특성과 용도에 있어 가장 유사한 상품”을 의미하며, 이의 일환으로 국내산업은 “국내동종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들의 국내동종상품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제품의 국내총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생산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종상품의 결정은 산업의 결정이다”는 판결한 사례들이 있는데,[80] 이는 법령상의 정의로 산업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산업은 법령상의 범위로 국한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현존하는 동종상품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대체제시장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81] 그러므로 동종상품의 대체시장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범위가 현존 동종상품의 생산자보다 넓다고 가정한다면, 국내산업에 대한 범위는 좁혀져야만 할 것이다.[82]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법령상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동종상품의 경우는 상품군을, 국내산업은 상품의 생산자를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양자의 관계가 동일 혹은 상이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산업이 동종상품의 용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동종상품의 판정과 국내산업의 판정은 풀리지 않게 서로 얽혀있다.[83] 즉, 동종상품과 국내산업, 양자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이한 개별조사과정에서 동일한 국내동종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8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ITC는 “미완제품분석”을 적용하고 있으나,[85] 일반적으로 조사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음공정제품으로까지 국내동종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지 아니한다.[86] 또한 USITC는 개별조사에서 국내동종상품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이 국내동종상품의 미국 내 모든 생산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 대하여 두 가지의 예외상황이 존재한다. “적절한 상황”이 다음에 속하는지를 살핀다; (1) 국내산업이 미국의 특정 지리적 지역내 국내동종상품생산자 인지 혹은; (2) 특정 “관계당사자”가 국내산업에서 제외되는지를 심사한다.[87]

---

80) *Asociacion Colombiana De Exportadores De Flores v. United States*, 12 C.I.T. 634, 693 F.Supp. 1165, July 14, 1988, p.1169.

81) *F.T.C. v. Whole Foods Market, Inc.,* 502 F.Supp.2d 1, 6+, 2007-2 Trade Cases P 75,831, 75831+ (D.D.C. Aug 16, 2007) (NO. CIV A 07-1021 PLF) pp.6-7.*; Apani Southwest, Inc. v. Coca-Cola Enterprises, Inc.,* 300 F.3d 620, 626+, 2002-2 Trade Cases P 73,769, 73769+ (5th Cir.(Tex.) Aug 12, 2002) (NO. 01-11026) p.626.*; Brown Shoe Co. v. United States*, 370 U.S. 294, 82 S.Ct. 1502, Decided June 25, 1962, pp.1523-1524. ;Bruce M. Steen, *op. cit.,* p.1484.

82) 만약 법원이 국내산업을 필요한 것보다 더 좁게 정의한다면, 덤핑판정에서 실질적 피해의 결정이 더 쉬워질 것이다. Bruce M. Steen, *ibid,* p.1470.

83) *Torrington Company v. Untied States*, 14 C.I.T. 648, 747 F.Supp. 744, Sept. 11, 1990, p.748.

84) Robert Carpenter, *op. cit.*, p.Ⅲ-34.

85) *Artists' Canvas from China*, Inv. No. 731-TA-1091 (Final), USITC Pub. 3853, May 2006, p.6.; *Live Swine from Canada*, Inv. No. 731-TA-1076 (Final), USITC Pub. 3766, April 2005, p.8; *Certain Frozen Fish Fillets from Vietnam*, Inv. No. 731-TA-1012 (Preliminary), USITC Pub. 3533, August 2002, p.7.; 미완제품과 관련한 USITC의 고려요인은 다음과 같다; (1)이전공정상품이 다음공정상품의 생산을 결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2)이전공정상품과 다음공정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시장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3)이전공정상품과 다음공정상품의 물리적 성질과 기능에서의 차이; (4)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의 차이; (5)다음공정상품으로 이전공정상품이 변형되기 위해 사용된 과정의 상당성과 범위.

86) Robert Carpenter, *op. cit.*, p.Ⅲ-34.

87) 대부분의 사례에서 USITC는 특정생산자의 국내운영이, 국내산업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지

요약하자면, 미국 내에서 USITC가 피해를 측정하는 관련 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소수의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88] 판례상에서도 산업의 결정에 있어 모호하고 논쟁이 많다.[89]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하여, 미국은 '산업'이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 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USITC는 동종상품판정이 국내산업판정과 동일하다는 CIT의 판결을 무시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생산자들이 "산업"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로서의 산업에 대한 피해는 작아질 것이며, 피해부정판정의 가능성은 증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USITC의 입장에서는 이를 제외시키려고 할 것이다.[90]

또한 USITC는 지역산업분석과 관련하여 상품의 특성이 중량 대비 가격이 낮고 높은 운송비로 인해 상품생산지역이 격리되는 경우와 같은 고유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였다.[91] 하지만 CIT는 *Atlantic Sugar, Ltd. v. United States*사례에서 USITC가 산업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업'이라는 용어에서 지역적 변동을 정의할 때 자의적이거나 재량적인 해석"에 대하여 주의해야만 한다고 했다.[92] USITC가 해당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위협 또는 지역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 가능하다면 상무부는 조사대상기간 중 관련지역에 판매목적으로 해당물품을 수출한 특정 수출업자 혹은 생산자들의 해당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93]

V. 결 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에서 USITC가 결정하는 피해의 범위가

여부의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USITC는 미국내 기업의 생산관련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속성을 고려한다. 특히 (1) 기업 자본투자의 출처와 양; (2) 미국생산활동에서 포함된 기술전문가; (3) 미국내 생산으로 획득한 부가가치; (4) 고용수준; (5) 미국내에서 발원한 상품의 양과 유형; (6) 국내동종상품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이끈 미국내에서의 기타 비용과 활동.;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Inv. Nos. 731-TA-1092-1093 (Final), USITC Pub. 3862, July 2006, pp.8-11; *Artists' Canvas from China*, Inv. No. 731-TA-1091 (Final), USITC Pub. 3853, May 2006, p.13,; *Certain Frozen or Canned Warmwater Shrimp and Prawns from Brazil, China, Ecuador, India, Thailand, and Vietnam*, Inv. Nos. 731-TA-1063-1068 (Final), USITC Pub. 3748, January 2005, pp.12-14.; *DRAMs and DRAM Modules from Korea*, Inv. No. 701-TA-431 (Final), USITC Pub. 3616, August 2003, p.11.

88) 지금까지 주로 산업의 정의와 관련한 USITC의 현행관행 및 의견이 보장되고 있다.; David M. Repp,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rotection at a Cost", *Journal of Corporation Law (15 JCORPL 65)*, Fall 1989, p.74.

89) Bruce M. Steen, *op. cit.,* p.1460.

90) 실제 1982년 "중국산버섯통조림사건"에서 USITC는 국내산업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버섯통조림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미국산 생버섯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내버섯통조림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Canned Mushroom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v. No. 731-TA-115, USITC Pub. 1324, Dec. 1982, p.10.

91) Robert Carpenter, *op. cit,* p.Ⅱ-36.

92) *Atlantic Sugar, Ltd. v. United States*, 519 F.Supp. 916, (CIT 1981), p. 920.; 이후 이러한 견해를 인용한 사례로는 *Committee for Fair Coke Trade v. United States*, 2004 WL 1615600, 15, 26 ITRD 1895, 1895 (CIT Jun 10, 2004) (NO. SLIP OP. 04-68, 01-00826); *Altx, Inc. v. United States*, 2002 WL 1560884, 8, 26 C.I.T. 709, 709, 24 ITRD 1643, 1643 (CIT Jul 12, 2002) (NO. SLIP OP. 02-65, 00-09-00477) 등이 있다.

93) 19 U.S.C. §§. 1671e(c)와 1673e(d).

속해야 하는 동종상품 및 국내산업의 해석범위에 대하여 관련법령 뿐만 아니라 미국 USITC, CIT 및 연방항소법원에서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반덤핑관세 부과에서 피해판정과 관련하여 국내산업과 동종상품의 해석은,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의 개시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키고, 또한 여러 비용부담이 한국 수출기업에게 발생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반덤핑관세부과와 관련한 피해결정은 USITC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의 결정을 위해 "국내산업"과 "동종상품"의 해석이 불가피하다. 국내산업과 동종상품의 개념은 덤핑여부의 판단대상뿐만 아니라 피해의 범위 및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내산업과 동종상품의 범위를 축소 혹은, 확대하느냐에 따라 반덤핑조치가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94]

미국 반덤핑관세부과는 덤핑의 존재와 피해의 존재를 요건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의 존재에 초점을 두어, 피해가 있어야 하는 "국내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덤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국내산업"에 해당해야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79년 통상협정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뿐만 아니라 해석지침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명문상의 규정만 존재할 뿐 그 해석에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USITC가 가지는 독특한 법적지위에 기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즉 USITC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산업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동종상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국내산업을 정의할 때 산업은 총체적인 집합체를 의미하지만 동종상품을 정의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상품군이 된다. 이에 양자의 범위가 동일 혹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반덤핑법 및 관련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덤핑피해가 발생한 산업이라고 하여 반드시 동종상품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USITC의 국내산업 및 동종상품의 해석은 개별 사례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CIT 및 연방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USITC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 또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이가 성립한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써, 대미무역량이 국가총교역량에서의 비중은 엄청날 것이지만, 한·미 FTA와 같은 수출시장의 다변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미무역의존도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수출기업은 미국반덤핑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95]

한·미 FTA와 관련하여, 비준이후 반덤핑과 관련한 준거법(choice of law)의 적용 문제에 있어 우리나

94) 이환규,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방안",「성균관법학」제16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06, p.706 참조.

95) 박종수, "무역장벽수단으로써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그 대응 방안",「국제상학」제1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05, p.331.

라와 미국 사이에 기존의 판결과는 달리 양국이 무역구제분야의 협정을 반영하게 됨으로써, USITC의 반덤핑판정이 상호간에 공격적 피해판정보다는 완화된 피해판정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USITC가 한국무역위원회를 보다 인정하는 판정으로 이전의 반덤핑판정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판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국반덤핑제도의 피해결정에 핵심요소인 국내산업과 동종상품의 해석범위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FTA 성립 이후에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고준성 외,「미국통상법연구」, 법무부, 1996.

권영민,「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제도에 대한 비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김기영, “통상의 국내적 규제와 사법심사 -미국국제무역법원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성격과 의의-” 「기업법연구」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12.

박종수, “무역장벽수단으로써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그 대응 방안”,「국제상학」제1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05.

박형래, “USITC의 대 아시아 개도국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제29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4. 04.

이상윤, “덤핑수입피해 판정시 고려요인 평가방법과 인과관계 설정기준”,「무역구제」-겨울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1.

이춘삼, “미국 반덤핑법상 국내산업피해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해석론(상)”,「통상법률」제23호, 법무부, 1998.

이환규,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방안”,「성균관법학」제16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06,

임병우, “반덤핑절차에서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획정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문제점 및 제언”, 「무역구제」2006-여름호, 무역위원회, 2006.

KOTRA 통상전략팀, 「2006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7년도 전망」, KOTRA, 2006. 12.

Barton, John H., Fisher, Bart S., and Malloy, Michael P., "Antidumping Duties", *American Trade Policy,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2006.

Bourdeau, John A., "The ALR databases are made current by the weekly addition of relevant ne cases", *American Law Reports ALR Federal*, 1998.

Bown, Chad P., and Rachel, McCulloch, "Trade Remedies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Why Are So Few Challenged?", *Journal of Legal Studies*, June 2005.

Cassin, Andrea C., Reynolds Neal J., "Judicial Revi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s Injury Determination injur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8 Geo. J. Int'l L. 89)*, Fall 2006.

Carpenter, Robert,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12 edi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pril 2007.

Feld, Daniel 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ntidumping Act of 1921", *American Law Reports ARL Federal (42 A.L.R. Fed. 821),* 2007.

Feinberg, Robert M., and Reynols, Kara M., "Friendly Fire?: The Import of US Antidumping Enforcement on US Exporters",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2006-04, American University*, April 2006.

Finger, J. Michael,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Antidumping Regulation," *Working Paper WPS 783, The World Bank*, October 1991.

Irwin, Douglas A., "The Rise of U.S. Antidumping Activity in Historical Perspective", *IMF Working Pater WP/05/3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ebruary 2005.

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Project(NFAPP), "Antidumping Legislation: Issues for the Produce Industry", *NFAPP #00-1, Arizona State University*, January 2000.

Reynolds, Kara M., "Dumping on U.S. Farmers: Are There Biases in Global Antidumping Regul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2006-03, American University*, January 2006.

Overview and Compilation of U.S. Trad Statues, *Overview and Compilation of U.S. Trade Statut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09th Congress 1st Session, 2005 Edition, June 2005.

Rosson, Parr and Adcock, Flynn, "A Primer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etitions", *Center for North American Studies CNAS 2000-1*, January 2000.

Steen, Bruce M., "Economically Meaningful Markets: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Like Product' and 'Domestic Industry' under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Virginia Law Review, 73 VALR 1459*, November 1987.

(관련사례)

Altx, Inc. v. United States, 2002 WL 1560884, 8, 26 C.I.T. 709, 709, 24 ITRD 1643, 1643 (CIT Jul 12, 2002) (NO. SLIP OP. 02-65, 00-09-00477).

Apani Southwest, Inc. v. Coca-Cola Enterprises, Inc., 300 F.3d 620, 626+, 2002-2 Trade Cases P 73,769,

73769+ (5th Cir.(Tex.) Aug 12, 2002) (NO. 01-11026).

Artists' Canvas from China, Inv. No. 731-TA-1091 (Final), USITC Pub. 3853, May 2006.

Asociacion Colombiana De Exportadores De Flores v. United States, 12 C.I.T. 634, 693 F.Supp. 1165, July 14 1988.

Brown Shoe Co. v. United States, 370 U.S. 294, 82 S.Ct. 1502, Decided June 25, 1962.

Cabot Corp. v. United States, 788 F.2d 1539, 4 Fed. Cir. (T)80, Appeal No. 86-729, April 9 1986.

Canned Mushroom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v. No. 731-TA-115, USITC Pub. 1324, Dec. 1982.

Certain Stainless Steel and Strip From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Republic of Korea, Mexico, Taiwan, and The United Kingdom, Investigation Nos. 701-TA-380-382 and 731-TA-797-804(Final), USITC Publication No. 3208. July 1999.

Certain Frozen Fish Fillets from Vietnam, Inv. No. 731-TA-1012 (Preliminary), USITC Pub. 3533, August 2002.

Certain Frozen or Canned Warmwater Shrimp and Prawns from Brazil, China, Ecuador, India, Thailand, and Vietnam, Inv. Nos. 731-TA-1063-1068 (Final), USITC Pub. 3748, January 2005.

Cleo Inc. v. U.S., 2006 WL 2685080, *3+, 28 ITRD 2294, 2294+ (CIT Aug 31, 2006) (NO. 05-00336, SLIP OP. 06-131).

Committee for Fairly Traded Venezuelan Cement v. U.S., 279 F.Supp.2d 1314, 1319+, 27 C.I.T. 1104, 1104+, 25 ITRD 1903, 1903+ (CIT Jul 28, 2003) (NO. SLIP OP. 03-95, 00-12-00547).

Committee for Fair Coke Trade v. United States, 2004 WL 1615600, 15, 26 ITRD 1895, 1895 (CIT Jun 10, 2004) (NO. SLIP OP. 04-68, 01-00826).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China and Korea, Inv. Nos. 731-TA-1092-1093 (Final), USITC Pub. 3862, July 2006.

DRAMs and DRAM Modules from Korea, Inv. No. 701-TA-431 (Final), USITC Pub. 3616, August 2003

Ellis K Orlowitz Co. v. United States, 47 Cust.Ct. 583, 200 F.Supp.302, Oct. 23 1961.

F.T.C. v. Whole Foods Market, Inc., 502 F.Supp.2d 1, 6+, 2007-2 Trade Cases P 75,831, 75831+ (D.D.C. Aug 16, 2007) (NO. CIV A 07-1021 PLF).

Hosiden Corp. v. Advanced Display Mfrs., 85 F.3d 1561, May 31, 1996, p.1568.;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 747 F.Supp.744, Sept. 11, 1990.

Hyatt v. Dudas, 492 F.3d 1365, 1368, 83 U.S.P.Q.2d 1373, 1373 (Fed.Cir.(Dist.Col.) Jun 28, 2007) (NO. 2006-1171).

Live Swine from Canada, Inv. No. 731-TA-1076 (Final), USITC Pub. 3766, April 2005.

McLean v. Department of Treasury, 2007 WL 4125032, *1 (Fed.Cir. Nov 05, 2007) (Table, text in WESTLAW, NO. 2007-3291).

NEC Corp. v. Department of Commerce, 36 F.Supp.2d 380, 383+, 22 C.I.T. 1108, 1110+, 20 ITRD 2359, 2359+ (CIT Dec 15, 1998) (NO. 98-164, 97-11-01967).

NMB Singapore Ltd. v. U.S., 288 F.Supp.2d 1306, 1313+, 27 C.I.T. 1325, 1325+, 25 ITRD 1985, 1985+ (CIT Sep 03, 2003) (NO. SLIP OP. 03-115, 00-07-00373).

Nippon Steel Corp. v. U.S., 458 F.3d 1345, 1347+, 28 ITRD 1321, 1321+ (Fed.Cir. Aug 10, 2006) (NO. 05-1404, 05-1417).

Nippon Steel Corp. v. Int'l Trade Comm., 345 F.3d 1379, (Fed. Cir. 2003).

Nippon Steel Corp. v. United States, 19 CIT 450, (CIT 1995).

Texas Crushed Stone Co. v. United States, 35 F.3d 1535, (Fed. Cir. 1994).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 747 F.Supp.744, (CIT 1990).

U.S. Steel Group v. United States, 96 F.3d 1352, (Fed. Cir. 1996).

(관련법령)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World Trade Organization, Antidumping Agreements.

USC

(웹사이트)

무역위원회, www.ktc.go.kr

미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ww.usitc.gov

미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ia.ita.doc.gov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한국무역협회, atidumping.kita.net